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8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 : 윤재옥ㆍ이달희ㆍ정동만

백종헌 · 서천호 · 조은희

김태호 • 이만희 • 김상욱

김석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,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동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.

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"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"에서 "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"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주요내용

- 가. 제10조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"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"에서 "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"로 변경함(안 제10조).
- 나. 제10조의 단서를 삭제함(안 제10조 등).

법률 제 호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"제10조 본문"을 "제10조"로 한다.

제10조 본문 중 "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"를 "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중 "제10조 본문"을 "제10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, 제10조 단서"를 "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"으로 한다.

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0조 본문"을 "제10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	제8조(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
제한 통고) ① 제6조제1항에	제한 통고) ①
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	
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	
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	
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	
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	
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	
있다. 다만, 집회 또는 시위가	
집단적인 폭행, 협박, 손괴, 방	
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	
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	
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	
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	
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	
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	
있다.	
1. 제5조제1항, <u>제10조 본문</u> 또	1 <u>제10조</u>
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	
될 때	
2. • 3. (생략)	2. •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	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
시간) 누구든지 <u>해가 뜨기 전</u>	시간) <u>오전 0</u> 시부터
<u>이나 해가 진 후에</u> 는 옥외집회	오전 6시까지
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	
다. <u>다만, 집회의 성격상 부득</u>	<u><단서 삭제></u>
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	
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	
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	
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	
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	
회를 허용할 수 있다.	
제20조(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)	제20조(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)
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	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	
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	
한 시간 이내에 자진(自進) 해	
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	
지 아니하면 해산(解散)을 명할	
수 있다.	
1. 제5조제1항, <u>제10조 본문</u> 또	1 <u>제10조</u>
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	
는 시위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, 제	3. <u>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</u>
<u>10조 단서</u> 또는 제12조에 따	
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	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1. ~ 3. (생 략)